

—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12월 2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12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12월 22일

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여가 공간 확충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.

다. 주요내용

- 취득재산

처 번	처분	필수	면적(m ²)	소유자	추정가액(천원)	비고
계		8	4,030		487,630	
원평동1004-2	도로	1	100	국	12,100	
원평동995-9	구거	1	150	국	18,150	
원평동466-2외	답	6	3,780	원평동 이병욱외 2	457,380	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노인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임.
- 기존 노인회복지회 부지 3필지 9,202㎡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종합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추가로 8필지 4,030㎡에 추정가 487,630천원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임.
- 기존 인접시설인 민속관과 산책로, 게이트볼장 등을 활용하되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장기적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계획안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